



대구대학교와 농촌진흥청간 학술·연구교류에 관한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농촌진흥청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녹색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학·연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이 농업·농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이 분야의 학술·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인력과 학술정보의 교류 및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농업 및 첨단 융·복합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동연구) 양 기관은 학·연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동연구 등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
제3조(연구협력과 인력교류) ① 양 기관은 사전에 규모와 기간을 정하여 연구 협력과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.

② 농촌진흥청은 시험연구사업 등에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자와 지도교수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.

③ 대구대학교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과 청장이 추천하는 농촌진흥공무원이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며,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학·연협동연구 석·박사 학위과정을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양 기관은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(교)직원을 겸임교수, 겸임연구원·지도관으로 임용하고, 강의수당, 논문 지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학술정보교류 및 공동연구) 양 기관은 학술과 기술정보 교류에 상호 협력하며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5조(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) 양 기관은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양 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기밀유지) 양 기관이 연구협력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발생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8조(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)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양 기관의 장은 위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,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년 6월 1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농촌진흥청
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

청장 김재수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